

## 이용자 부담의 개편에 대해 (2015년 8월부터)

2015년 8월부터 보험료 인상을 가능한한 억제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10%로 동결시키고 있는 이용자 부담에 있어서 부담 능력이 있는 일정 이상 소득자의 본인부담이 20%가 됩니다.

요지원·요개호 인정을 받고 있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부담 비율 (10% 또는 20%)을 기재한 「개호보험부담 비율증」을 송부하겠습니다.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 서비스 제공 사업소에 제시해 주십시오.

이용자 부담 비율				
여지원·요개호 인정을 받고 있거나 제1호 피보험자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160만엔 이상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
		동일세대의 제1호 피보험자 연금수입 + 기타 합계 소득금액이	단신 세대는 280만엔 미만	10%
			2인 이상은 346만엔 미만	10%
	본인의 합계 소득금액이 160만엔 미만			

※요지원·요개호 인정을 받고 있는 제2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분은 일률적으로 10% 부담이 됩니다.

※「기타 합계 소득금액」이란, 합계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적연금 등의 소득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각 서비스의 비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비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나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가요금 등이 발생하므로, 계약 시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케어플랜 작성

케어플랜 작성 이외에,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보험처리)

(1개월당. 요개호 1~5는 케어매니저의 취급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내 용	서비스비용(100%)	이용자 부담(0%)
요지원1·2	4,781엔	0엔
요개호1·2	11,587엔	0엔
요개호3~5	15,045엔	0엔
초회 가산	3,336엔	0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인정을 받았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